

[2022. 2. 24. 일부개정]

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영재교육원 운영 규정



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

JEOLLABUKDO JEONGEUP OFFICE OF EDUCATION

<http://www.jbjue.kr/>

< 목 차 >

제 1장. 총칙	1
제 1조. 목적	1
제 2조. 명칭<삭제>	1
제 3조. 위치<삭제>	1
제 2장. 수업연한	1
제 4조. 수업연한	1
제 5조. 학기<삭제>	1
제 3장. 학급편제 및 학생 정원	1
제 6조. 학제	1
제 7조. 학급편제	1
제 8조. 학급정원	1
제 4장. 입학·퇴학	1
제 9조. 입학시기	1
제 10조. 입학자격	1
제 11조. 입학결정<삭제>	2
제 12조. 자퇴	2
제 13조. 제적	2
제 14조. 추가입학	2
제 15조. 전학, 시도간 전입	2
제 5장. 교과 및 교육과정·수업시수·평가와 과정 수료의 인정	2
제 16조. 교과 및 교육과정	2
제 17조. 수업시수	2
제 18조. 원외교육활동	3
제 19조. 평가 및 결과처리	3
제 20조. 수료	3
제 6장. 입학 선정 관련비용 및 운영 경비	3
제 21조. 입학선정관련비용	3
제 22조. 운영경비	3
제 7장. 영재교육대상자선정심사위원회	3
제 23조. 구성	3
제 24조. 회의	4
제 25조. 기능	4
제 8장. 영재교육대상자 선정	4
제 26조. 지원자격	4
제 27조. 선발절차	4
제 28조. 선발방법	5
부 칙	5
• 시행일	5
• 시행세칙	5

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영재교육원 운영규정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본 운영규정은 영재교육진흥법(2017.12.19.) 및 동법시행령(2019.7.2.)에서 위임된 사항과 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영재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12.10.25.><개정 2021.3.5.>

제2조(명칭) 삭제 <2012.10.25.>

제3조(위치) 삭제 <2012.10.25.>

제2장 수업연한

제4조(수업연한)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하되,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.
<개정 2012.7.2.>

제5조(학기) 삭제 <2012.7.2.>

제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

제6조(학제) 영재교육원은 학교급제(초등반, 중등반)로 운영한다.<개정 2012.10.25.>

제7조(학급편제) 초등반은 5학년 과학·수학반, 6학년 과학·수학반 2개 반은 학년제로, 국어반, 정보반, 발명반 3개반은 무학년제로 운영하며, 중등반은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과학·수학사사반 1개반을 운영, 총 6개반으로 한다. <개정 2016.8.30.>

제8조(학급정원) 학급 당 정원은 초등반은 16명 이내로, 중등사사반은 5명 이내로 한다.
<개정 2016.8.30.><개정 2021.3.5.>

제4장 입학·퇴학

제9조(입학 시기) 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.

제10조(입학 자격)<개정 2012.10.25.>

- ① 영재교육대상자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교육장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.
- ② 삭제<2012.10.25.>
- ③ 삭제<2012.10.25.>
- ④ 전출 등 공적인 사유 없이 개인적인 사유로 자퇴한 학생, 제적 처리된 학생은 영재교육원에 다시 입학할 수 없다.<신설 2012.7.2.>
- ⑤ 최종 선정된 영재교육대상자라 하더라도 타 영재교육기관에 합격한 자 및 타 영재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자는 입학을 취소한다.<개정 2012.10.25.>

제11조(입학 결정) 삭제<2012.10.25.>

제12조(자퇴) 자퇴하려는 자는 그 사유를 갖추어 자퇴원을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13조(제적)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제적 처리할 수 있다.

1. 교육대상학생이 질병, 전학, 타 영재교육기관에 등록 등 교육을 받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
2. 무단으로 3회 이상 결석할 경우<개정 2020.2.17.>
3. 전체 수업시수의 20%를 초과하여 결과한 경우<개정 2022.2.24.>
4. 수업태도가 불성실하여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
5.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으로 3회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<신설 2012.7.2.>, <개정 2022.2.24.>

제14조(추가입학) 전출, 자퇴, 제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했을 때, 총 이수시간 중 80% 이상의 이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영재교육대상자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보자 순으로 보충한다.

제15조(전학, 시도간 전입)

- ① 영재교육대상자가 전라북도 소속 관외 학교로 전학시, 전라북도교육청 승인 영재교육기관으로 전학 신청 가능하며, 영재교육대상자가 희망하는 경우 기존 영재교육원의 교육이수가 가능하다.<개정 2021.3.5.>
- ② 타시도교육감 승인 영재교육기관에 재원 중인 영재교육대상자가 전라북도로 전학 및 거주지 이전에 의해 영재교육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, 해당 영재교육대상자의 보호자는 전라북도교육감 승인 영재교육기관에 전입을 신청할 수 있다. 전입 신청을 받은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교육과정 이수 정도를 고려하여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내에서 전입을 허가할 수 있다.<개정 2021.3.5.>

제5장 교과 및 교육과정·수업시수·평가와 과정 수료의 인정

제16조(교과 및 교육과정) 교과는 초등부는 수학, 과학, 국어, 정보, 발명으로, 중학부는 수학, 과학으로 영재교육과정을 운영한다. <개정 2015.10.15.>

제17조(수업시수)

- ① 연간수업시수는 초등반은 80시간 이상, 중등사사반은 40시간 이상으로 한다.<개정 2017.2.13.><개정 2021.3.5.>
- ② 교육내용은 소양과목(리더십교육, 인성교육, 관련 행사 등) 15%, 전공교과 70%, 기타 활동(현장학습, 체험학습, 캠프, 봉사활동 등) 15%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, 교육과정 편성은 영재교육기관장이 최종 결정한다. <개정 2017.2.13.>
- ③ 중등 사사반의 교육내용은 소양과목(리더십교육, 인성교육, 관련 행사 등) 10%, 전공교과 80%, 기타활동(현장학습, 체험학습, 캠프, 봉사활동 등) 10%로 운영함을 원칙으로

하되, 교육과정 편성은 영재교육기관장이 최종 결정한다.<개정 2017.2.13.>

④수업시수 중 10% 이내에서 자기주도 학습과정을 인정한다.<개정 2021.3.5.>

⑤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다.<개정 2021.3.5.>

제18조(원외교육활동) 대학, 연구소의 과학영재교육센터, 특허청과 연계하여 실시한 원외 교육활동도 수업으로 인정한다.

제19조(평가 및 결과처리)

①원생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산출물평가, 과정평가 등을 실시하고 결과는 수료 상정자료로 활용한다.<개정 2013.3.27.>

②생활기록부에 준하는 자료를 작성 관리하여 영재교육대상자 소속 학교의 장에게 송부하고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한다.

제20조(수료)

①원생의 교육과정 이수 정도를 평가하여 각 학년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.

②평가결과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수료 대상자에서 제외한다.

1. **전체 수업시수** 80% 미만인 학생(단 공결은 출석으로 인정하되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.)<개정 2013.3.27.>, <개정 2022.2.24.>

2. 산출물평가와 과정평가를 합산한 점수의 40% 이하 득점한 학생

③본원을 수료한 자는 수료증을 수여한다.

제6장 입학 선정 관련비용 및 운영 경비

제21조(입학선정관련비용) 본원 입학 선정과 관련된 비용은 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 자체예산 및 전라북도교육청의 지원 예산으로 운영하되 선정 신청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.<개정 2013.3.27.>

제22조(운영경비) 본원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의 자체 예산 및 전라북도교육청의 지원 예산으로 한다.

제7장 영재교육대상자선정심사위원회

제23조(구성) 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영재교육원 영재교육대상자선정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

①영재교육대상자선정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영재교육원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<개정 2012.10.25.>

1. 영재교육기관에서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

2. 영재교육전문가

3.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

4. 교육행정경력 5년 이상의 공무원
5. 영재교육대상자 학부모
6. 그 밖에 영재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
②위원장은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.<개정 2011.10.24.>

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영재교육기관 재직위원의 임기는 당해 기관에서 재직하는 기간으로 정하며, 영재강사위원은 강사직의 사임과 함께 자동 해임된다. 결원에 의해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은 잔여기간을 임기로 한다.<개정 2013.3.27.>

④영재교육 지도교사는 영재 관련 직무연수 60시간을 이수해야 하며, 최근 10년 이전 연수 이수자는 추가 이수를 권장한다.<개정 2021.3.5.>

제24조(회의)

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에서 임시 의장을 선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.<개정 2012.10.25.>

③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개정 2012.10.25.>

제25조(기능) 영재교육대상자선정심사위원회(운영위원회를 겸함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.<개정 2012.10.25.>

- ①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·추천에 관한 사항
- ②영재교육원의 교육과정 편성·운영, 이수의 인정 및 수료에 관한 사항
- ③영재교육에 소요되는 예산의 확보 및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
- ④그 외의 영재교육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제8장 영재교육대상자 선정

제26조(지원자격) 영재교육원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.<신설 2012.10.25.>

①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 관내 초등학교 4,5학년으로서 국어, 수학, 과학, 발명, 정보 분야에 탁월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은 학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지원할 수 있다.<개정 2012.10.25.> <개정 2015.10.15.> <개정 2021.7.2.>

②삭제<개정 2021.7.2.>

③중등사사반(1학급)은 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 관내 초등학교 6학년 재학생으로 본 영재교육원 수료예정자 중 관내 중학교에 입학하고, 담임교사와 학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4.12.15.><개정 2015.10.15.><개정 2021.3.5.>

제27조(선발절차) 본원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절차는 다음과 같다.<개정 2012.10.25.>

- ①선발공고(신청접수일 1개월 전)
- ②학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의 신청서 접수(학교장, 지도교사, GED활용)

<개정 2013.3.27.>

- ③대상자 선발(GED, 영재성검사, 심층면접 활용)
- ④정읍교육지원청 영재교육대상자선정심사위원회 심의(최종선발)
- ⑤교육장 승인
- ⑥합격자 발표

제28조(선발방법)

- ①선발인원은 정원(학급당 16명 이내)의 1.5배 이내로 선발한다(후보자 포함).<신설 2012.10.25.><개정 2017.2.13.><개정 2021.3.5.>
- ②학교별 관찰 추천점수(GED) 10%, 영재성 검사 70%, 심층면접 20%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한다.<개정 2016.1.20.>
- ③동점수일 경우 우선 선정 순위는 다음과 같다.
 - 1. 1순위 : 영재성검사 점수가 높은 학생 우선
 - 2. 2순위 : 심층면접 점수가 높은 학생 우선
 - 3. 3순위 : GED 교사관찰추천 점수가 높은 학생 우선
 - 4. 4순위 : 삭제<2015.1.20.>
- ④정시 입학자 중 결원이 생길 경우 해당 학년 후보자의 순위에 의해서 입학자격을 부여한다.(단, 이수 시수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 한함)
- ⑤영재교육대상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심의 확정하고, 교육장이 승인한다.
- ⑥전라북도교육감이 승인한 영재교육기관 및 타 기관에서 운영하는 영재교육원에 합격한 학생은 한 개의 영재교육기관을 선택하여 입학할 수 있다.<개정 2020. 2. 17.>
- ⑦본 영재교육원 5,6학년 통합학급인 국어반, 발명반, 정보반과 과학·수학 5학년반의 수료학생 중 동일계열을 지원하는 학생은 5점, 선발하는 해에 정읍발명교육센터 프로그램 이수자 중 발명반에 지원하는 학생은 15시간 이상 이수시 3점, 30시간 이상 이수시 5점을 부여한다.<개정 2018.10.22.><개정 2021.3.5.>
- ⑧선발 인원의 10% 이내에서 사회통합대상자를 선발한다.<개정 2013.3.27.><개정2021.3.5.>

부 칙

- ①(시행일) 본 운영 규정은 2022.2.25.부터 시행한다.
- ②(시행세칙) 본 운영 규정 외의 시행 상 필요한 세부 규정은 원장이 정한다.